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워크숍 자료집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안) 시범적용 -

- ▶ 일시: 2012년 9월 20일(목) 14:00-18:00
-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세미나실
-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일정 및 내용

세부일정 및 목차

14:00~14:10 **개회 및 인사**
(연구진)

14:10~14:50 **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안) 안내**
(김형주 ·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00~18:00 **2.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안) 시범평가 방법 논의**
(참가자 전원)

I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안)

김형주·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안) 안내

1. 평가지표체계(안 : 6개 대영역 - 14개 중영역 - 31개 지표)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1. 운영계획	1.1 목표수립 및 계획	(1) 1.1.1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2) 1.1.2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2. 청소년 이용	2.1 청소년 이용률	(3) 2.1.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4)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2.2 청소년 참여	(5)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6) 2.2.2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
	2.3 청소년 동아리	(7) 2.3.1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8) 2.3.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9) 2.3.3.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
3. 활동 프로그램	3.1 프로그램운영계획	(10) 3.1.1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3.2 프로그램 운영	(11) 3.2.1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수
		(12) 3.2.2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
	3.3 프로그램 평가	(13) 3.3.1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14) 3.3.2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4. 조직 및 시설	4.1 조직 및 예산	(15) 4.1.1 시설운영 관련 규정
		(16) 4.1.2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4.2 종사자	(17) 4.2.1 운영대표자의 적절성
		(18) 4.2.2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19) 4.2.3 직원의 자격증 수
		(20) 4.2.4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4.3 근무 안정성	(21) 4.3.1 직원의 근속연수
		(22) 4.3.2 직원의 복지수준
	4.4 시설 활용	(23) 4.4.1 연간 시설 운영률
		(24) 4.4.2 법적 시설기준 준수
5. 대외협력	5.1 대외협력	(25) 5.1.1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26) 5.1.2 대외홍보 노력
6. 안전 및 발전노력	6.1 안전 및 위생	(27) 6.1.1 안전 관리수준
		(28) 6.1.2 안전관리보험 가입
		(29) 6.1.3 위생설비 관리수준
	6.2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30) 6.2.1 운영발전 노력정도
		(31) 6.2.2 종합평가

2. 평가지표별 평가방향과 기준

1) 운영계획

■ 1-1. 목표수립과 계획

▶ 지표 1-1-1.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의 적절한 목표와 역점사업을 설정하고 중장기 관점의 시설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문화의집 발전계획서, 중장기계획서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
- ③ 평가기간 : 2009년 0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중장기계획 없음.
 - 미 흡(2) : 중장기계획 미흡한 수준에서 수립
 - 보 통(3) : 중장기계획 형식적 수준에서 수립
 - 우 수(4) : 중장기계획 일반적 수준에서 수립
 - 매우 우수(5) : 중장기계획 체계적 수준에서 수립
- ⑤ 평가요소 :
 - 미흡 등급의 ‘미흡한 수준’이라 함은 1~2쪽 내외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서를 의미함.
 - 보통 등급의 ‘형식적 수준’이라 함은 중·장기계획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전략, 내용 등)은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문화의집 특성과 관계없이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우수 등급의 ‘일반적 수준’이라 함은 중·장기계획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전략, 내용 등)은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이 문화의집 특성에 적합한 수준에서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매우 우수 등급의 ‘체계적 수준’이라 함은 계량화되고 성과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한 비전 설정, 실제

예산반영 등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함.

- 문화의집 위탁운영을 위한 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계획도 인정함.
- 평가대상 기간(2011~2011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최근 계획서를 인정함.
- 직영 운영 시설의 경우도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별도로 시설 자체적인 발전계획(위탁기간 내)을 수립하여야 함.

제출 증빙자료 1-1	1. 중·장기 발전계획서 2. 2011년 연간 운영계획서 (최근 개관 시설인 경우 개관 시점 연간운영계획서 제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관련 회의 개최 실적 자료

▶ 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매년 적절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운영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시설운영에 적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운영계획서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확인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연간운영계획서 없음.
 - 미 흡(2) : 연간운영계획서 미흡한 수준에서 수립
 - 보 통(3) : 연간운영계획서 형식적 수준에서 수립
 - 우 수(4) : 연간운영계획서 일반적 수준에서 수립
 - 매우 우수(5) : 연간운영계획서 체계적 수준에서 수립

⑤ 평가요소 :

- 미흡 등급의 '미흡한 수준'이라 함은 1~2쪽 내외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서를 의미함.
- 보통 등급의 '형식적 수준'이라 함은 연간운영계획서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프로그램 구성, 예산 등)은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문화의집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우수 등급의 '일반적 수준'이라 함은 연간운영계획서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전략, 프로그램, 예산, 시설관리 등)을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이 문화의집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적합한 수준에서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매우 우수 등급의 '체계적 수준'이라 함은 전년도사업 평가, 설문조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반영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 목표를 수립한 경우를 의미함.
- 최근 개관 시설인 경우, 개관시점 연간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적용함.

※ 제출 증빙자료 1-1 자료로 대체

2) 청소년 이용률

■ 2-1. 청소년 이용률

▶ 지표 2-1-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연간 전체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 이용자수의 비율을 일정정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 이용자 현황(이용자 기록 대장), 연간 청소년이용자수(청소년이용자 현황 보고서)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전체이용자 대비 연간 청소년 이용률 :

$$\frac{2011년\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2011년\ 연간\ 전체\ 이용자\ 수} \times 100 = [\quad \quad \%]$$

※ 법적기준 미 준수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5% 이상

⑤ 평가요소 :

-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 전체 이용자 수 : 매일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인원(단순시설이용자, 프로그램 단위별 연인원, 단순방문이용자 등) 합산, 동일 이용자가 같은 날에 다른 프로그램 이용 시 중복 계산

- 청소년 이용자 수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활동시설(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장, 특성화활동장, 기타 실내활동장) 내에서 매일 참여활동한 청소년, 동일 청소년이 같은 날에 다른 프로그램 이용시 중복 계산
 - 청소년 이용자 수 포함 사례 : 단순방문 이용자, 청소년대상 강좌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이용자 수, 청소년문화의집 야외활동 참여 청소년은 프로그램(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참여시 인정함.
 - 제외 대상 사례 : 프로그램(사업) 계획서 등 관련 근거자료가 없는 프로그램 참여시 이용자에
서 제외
 - 기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청소년이용률 평가지표에는 포함되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의 평가항목에서는 제외
- ※ 청소년문화의집 내 독서실을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독서실이 청소년문화의집 연면적
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함하되, 향후 독서실 운영은 청소년문화의집 고유기능과 맞지
않음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제출 증빙자료 2-1	1.청소년이용자 현황보고서(청소년문화의집 자체 양식)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이용자 기록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3. 프로그램(사업) 결과보고서 등 관련 근거자료

▶ 지표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비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수련시설별 일람표,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청소년이용자 현황 보고서,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

$$\frac{2011\text{년 연간 청소년 총 이용자 수/연간 운영일 수}}{\text{수용정원}} \times 100 = [\quad] \%$$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⑤ 평가요소 :

- 2011년 청소년 총 이용자 수 : 지표 2-1-1의 2011년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로 계산
- 연간 운영일 수 : 지표 4-4-1의 연간 운영일 수를 의미함.
- 수용정원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현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함.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이 현실과 맞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함.
- ※ 청소년문화의집 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권고함.

제출 증빙자료 2-2	1.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청소년수련시설 일람표 확인

■ 2-2. 청소년 참여

▶ 지표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간운영계획서, 구성인원,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연 2회 이하 개최
 - 미 흡(2) : 연 3 ~ 4회 개최
 - 보 통(3) : 연 5 ~ 6회 개최
 - 우 수(4) : 연 7 ~ 11회 개최
 - 매우 우수(5) : 연 12회 이상 개최
- ⑤ 평가요소 :
 - 개최인정 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기준에 적합한 경우, 청소년위원의 참여율 50% 이상만 인정
 - 동일 안건으로 2회 이상 개최하더라도 일자가 다른 경우는 인정

제출 증빙자료 2-3	1.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운영계획서 2.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등 3.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 지표 2-2-2.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기타 이용 청소년이 제시한 제안들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반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서, 기타 이용청소년제안 자료, 기타 반영관련 증빙 자료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 미 흡(2) : 운영위원회 및 기타 청소년 제시의견 미 검토
 - 보 통(3) : 운영위원회 및 기타 청소년 제시의견 검토 후 미반영
 - 우 수(4) : 운영위원회 및 기타 청소년 제시의견 검토 후 소극적 반영
 - 매우 우수(5) : 운영위원회 및 기타 청소년 제시의견 검토 후 적극적 반영(예산 등)
- ⑤ 평가요소 :
 - 우수 등급의 ‘소극적 반영’이란 검토 후 반영이 가능한 의견이 있음에도 반영한 실적이 미비한 경우를 의미함.
 - 매우 우수 등급의 ‘적극적 반영’이란 반영 가능한 내용을 시설여건에 맞게 적극 반영한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이 판단하기에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제안은 제시의견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 2011년 제시한 의견을 2012년 반영한 실적 제외(201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후 평점부여)
 - ※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개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성 및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 평점부여

제출 증빙자료 2-4	1.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기타 청소년 건의내용 반영 결과 증빙 자료(예산반영 내역 등)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 2-3. 청소년동아리

▶ 지표 2-3-1.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역 및 시설 내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 동아리 운영 예산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 없음.
 - 미 흡(2) : 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를 형식적 수준으로 수립
 - 보 통(3) : 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 일반적 수준으로 수립
 - 우 수(4) : 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만 체계적으로 수립
 - 매우 우수(5) : 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개별동아리별 연간계획서를 구비함.
- ⑤ 평가요소 :
 - 동아리활동 연간계획서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연간 운영할 전체 동아리의 수,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을 의미함.
 - 미흡 등급의 ‘형식적 수준’이란 1매 이외의 개요수준의 계획서를 의미함.
 - 우수 등급의 ‘체계적’이라함은 청소년의 요구도 반영여부, 평가, 예산, 추진방향 등 포함한 것을 의미함.

제출 증빙자료 2-5	1. 2011 청소년동아리활동 연간운영계획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개별 동아리별 연간운영계획서

▶ 지표 2-3-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용정원 대비 적합한 수준의 동아리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동아리 등록대장 및 서류, 동아리실 사용대장, 동아리 회의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text{청소년동아리 수} : \frac{\text{전체 청소년동아리 수}}{\text{수용정원}} \times 100 = [\quad] \text{개}$$

※ 청소년동아리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2개 미만	2개 이상	4개 이상	6개 이상	8개 이상

⑤ 평가요소 :

- 동아리 인정 기준 : 청소년문화의집에 정규 동아리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동아리만 인정, 동아리별 회원 수 5인 이상인 경우만 인정
- 동아리 비인정 사례 : 청소년문화의집 단순 시설 이용 모임은 제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는 제외

제출 증빙자료 2-6	1. 청소년동아리 등록현황 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청소년동아리별 등록대장(명단) 3. 청소년동아리별 활동실적(출석부, 회의록 등)

▶ 지표 1-3-3.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동아리 등록대장 및 서류, 행사참가신청서, 동아리실 사용대장, 동아리 회의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청소년동아리 활동빈도 : $\frac{\text{연간 동아리 모임 전체 횟수}}{\text{전체 동아리 수}} = [\quad] \text{회}$

※ 청소년동아리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8회 미만	8회 이상	15회 이상	26회 이상	60회 이상

⑤ 평가요소 :

- 동아리 수는 지표 2-3-2의 수를 의미함.
- 매회 참여율 50% 이상만 인정
- 활동실적 증빙자료(출석부, 회의록 등)가 없는 실적 제외
- ※ 청소년동아리연합회 활동실적 인정여부는 현장평가시 평가위원 판단 적용

3) 활동프로그램

■ 3-1.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지표 3-1-1.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방법의 수요자 요구조사 등에 기초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요구조사 및 운영계획 반영자료, 연간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없음.
 - 미 흡(2) : 형식적 수준의 연간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보 통(3)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우 수(4)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만 체계적으로 수립
 - 매우 우수(5)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단위프로그램별 운영계획을 구비함.
- ⑤ 평가요소 :
 - 미흡 등급의 ‘형식적 수준’이란 2~3매 내외의 개요수준의 계획서를 의미함.
 - 우수 등급의 ‘체계적’이라 함은 전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간반기별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수립한 경우를 의미함.

제출 증빙자료 3-1	1.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연간 단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3. 프로그램 개발·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자료

■ 3-2. 프로그램 운영

▶ 지표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검토 필요)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연속적 및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 현황 및 지도안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내 용	갯수	가중치	점수
정규프로그램 수 (동일프로그램 5회 이상 또는 사업기간 5개월 이상)		×3.0	
정규프로그램 수 (동일프로그램 3~4회 또는 사업기간 3~4개월)		×2.0	
일회성 프로그램 수		×1.0	
총 점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1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 이상

※ 프로그램 수와 질적 차원의 차원, 단순 방문과 자유로운 이용 중심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지표임.

⑤ 평가요소 :

- 활동 지도를 위한 지도안(계획)을 갖추고 있고,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갖추고 있는 청소년용

- 프로그램(목적사업 프로그램)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 숙박형 프로그램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 인정
 - 인정 프로그램 : 일회성 및 행사성, 사회봉사명령, 단순 체육프로그램(탁구, 농구 등) 등은 시설이 주차주관이 되어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타 기관 협조 프로그램운영 제외)
 - 제외대상 프로그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제외, 청소년문화의집 고유목적사업과 별도의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상담관련 프로그램은 제외, 성인 또는 유아 대상 강좌식 사회교육(체육)은 제외
- ※ 청소년대상 강좌식 프로그램 모두 제외
-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대상 프로그램은 모두 제외
- ※ 정규프로그램, 일회성프로그램에 대한 가중치 적용기준은 단위프로그램, 연속성 및 통합성 등에 대해 내용(프로그램 질 등)을 검토 한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제출 증빙자료 3-2	해당없음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 3. 프로그램별 예산집행 내역 확인

▶ 지표 3-2-2.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 (재검토 필요: 타당성 최하, 개발노력으로..)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우수한 내용을 지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과 위탁프로그램을 적극 수행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공모사업 당선 프로그램 현황, 위탁 프로그램 현황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점수 기준표

내 용	갯수	가중치	점수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부처 및 시·도 공모사업 당선 프로그램 수		× 3.0	
시·군·구 및 민간단체 등의 공모사업 당선 프로그램 수		× 2.0	
시·군·구의 위탁사업 프로그램 수		× 1.0	
각종 공모사업 신청 후 미당선 프로그램 수		× 0.5	
총 점			

※ 공모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이상	15점 이상	20점 이상

⑤ 평가요소 :

- － 공모사업관련 문서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함.
- － 위탁사업이란 시·군·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특성상 공모가 불가능하여 지정·위탁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제외

제출 증빙자료 3-3	1. 공모사업 당선 확정 및 제출 증빙서류(공문서 등)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공모사업 당선 프로그램 계획서 및 추진 실적 자료

■ 3-3. 프로그램 평가 (운영과 평가 :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향)

▶ 지표 3-3-1.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운영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프로그램 평가 관련 계획, 평가방법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프로그램 평가계획·실시가 없음.
 - 미 흡(2) : 프로그램 평가계획·실시가 미흡한 수준
 - 보 통(3) : 프로그램 평가계획·실시가 형식적 수준
 - 우 수(4) : 프로그램 평가계획·실시가 일반적 수준
 - 매우 우수(5) : 프로그램 평가계획·실시가 체계적 수준
 - ⑤ 평가요소 :
 - ‘형식적 수준’이란 소수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1~2매 내외의 개요수준의 계획서와 단순 만족도 조사 수준을 의미함.
 - ‘체계적 수준’이라 함은 적정 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이고 현실 반영 가능한 문항으로 실시한 경우를 의미함.
- ※ 평점기준 : 프로그램 평가계획서 및 실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제출 증빙자료 3-4	1. 프로그램 평가계획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프로그램 평가지 및 평가결과 기록 자료 등

▶ 지표 1-6-2.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운영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실적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프로그램 평가결과분석·반영 실적이 없음.
 - 미 흡(2) : 프로그램 평가결과분석·반영 실적이 미흡한 수준
 - 보 통(3) : 프로그램 평가결과분석·반영 실적이 형식적 수준
 - 우 수(4) : 프로그램 평가결과분석·반영 실적이 일반적 수준
 - 매우 우수(5) : 프로그램 평가결과분석·반영 실적이 체계적 수준
 - ⑤ 평가요소 :
 - ‘형식적 수준’이란 극소수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평가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 반영이 거의 실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체계적 수준’이라 함은 적정 수의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 경우를 의미함.
- ※ 평점기준 : 프로그램 평가분석 및 반영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 제출 증빙자료 3-4 자료로 대체

4) 조직 및 시설

■ 4-1. 조직 및 예산

▶ 지표 4-1-1. 시설운영 관련 규정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보수, 인사, 직제, 복무 및 회계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1개 이하 규정 보유
 - 미 흡(2) : 2개 규정 보유
 - 보 통(3) : 3개 규정 보유
 - 우 수(4) : 4개 규정 보유
 - 매우 우수(5) : 5개 이상 규정 보유
- ⑤ 평가요소 :
 - 청소년문화의집 규정은 시설운영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복무규정, 회계(예산)규정, 보수규정,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의미
 - 직영 및 위탁법인의 고유규정과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활용하는 운영규정만 인정하되, 직영 및 위탁법인 규정 내에 해당 문화의집 명칭이 명시 되고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된 내용이 있을 시는 인정함.
 - 규정의 인정범위는 규정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인정함(사군구 직영시설인 경우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일부 규정은 인정).

제출 증빙자료 4-1	해당 없음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시설운영관련 규정 목록(보수, 인사, 직제, 복무, 회계 등) 2. 관련규정집 등

▶ 지표 4-1-2. 전체 예산(지출)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전체운영 예산 중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결산서 등 지출 관련 자료, 사업비 지출 현황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전체 예산(지출) 대비 고유프로그램 사업비율:

$$\frac{\text{고유목적프로그램 사업비(천원)}}{\text{총지출 (천원)}} \times 100 = [\quad] \%$$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10% 미만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5% 이상

- 수용정원 대비 고유프로그램 사업비(원) 비율:

$$\frac{\text{고유목적프로그램 사업비}}{\text{수용정원}} \times 100 = [\quad] \%$$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 해당없음

- 수용정원 대비 전체예산(원 단위)

$$\frac{\text{전체 예산}}{\text{수용정원}} \times 100 = [\quad] \%$$

-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 2010년 배점기준 : 해당없음

⑤ 평가요소

- 고유목적프로그램 사업비는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전체이용자 중 청소년이 60%이상) 수행에 투입되는 예산을 의미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제외)
- 기타 프로그램 사업비는 전체 프로그램 사업 중 고유목적 프로그램 사업을 제외한 단순 문화강좌, 유아스포츠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의미함
-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및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별도의 회계관리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함
- ※ 총지출에서 배치지도사 지원 인건비는 제외

제출 증빙자료 4-2	1. 2011년 예산 및 결산서 총괄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2011년 예산 및 결산서 세부내역

■ 4-2. 종사자

▶ 지표 4-2-1. 운영대표자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는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상근으로 근무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운영대표자 인사기록카드, 기타 관련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운영대표자 자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근 근무를 하지 않음.
 - 보 통(3) :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상근으로 근무함.
 - 매우 우수(5) :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경력 등이 우수한 수준이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이 뛰어남.
- ⑤ 평가요소 :
 - 운영대표자 : 수련시설 등록증에 명시된 운영대표자를 의미함.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 :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출 증빙자료 4-3	1. 운영대표자 관련 인사기록부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운영대표자 자격관련 증빙자료 2.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및 인터뷰

▶ 지표 4-2-2.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법정 지도사수와 대비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 직원의 현황, 인사 관련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수 : [] 명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미 채용 시설 0점 처리

※ 배점 기준 : 상대 값, 절대 값 비교 검토 후 3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⑤ 평가요소 :

-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 근로계약체결시 정규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근로계약체결 한 청소년지도사를 의미함.
- － 제외대상자 : 비상근 관장 및 겸직 관장은 제외,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배치 지도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제외
- － 청소년문화의집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제출 증빙자료 4-4	1.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정규직 여부 확인(4대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직원 확인

▶ 지표 4-2-3. 직원의 자격증 수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정규직원은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정규직원의 활동관련 자격증 수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점수 산출기준 표]

구 분	개수	가중치	점수
국가 자격증		× 4.0	
민간 자격증		× 2.0	
기타 자격증		× 1.0	
총 점			

- 전체 정규직원 활동관련 자격증 = 총 [] 점
- 정규직원 1인당 자격증 평균 점수

$$\frac{\text{활동관련 자격증 수 총점}}{\text{정규직원 수}} = [\quad] \text{점}$$

- ※ 정규직원의 활동관련 자격증 보유 실적이 없는 시설은 0점 처리
- ※ 배점 기준 : 상대 값, 절대 값 비교 검토 후 3등급 구간 적용
- ※ 2010년 배점기준(총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1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 이상

⑤ 평가요소 :

- 정규직원 : 근로계약체결 시 정규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을 의미
- 제외 사례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배치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인력의 경우 모두 제외(정규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모두 제외), 청소년문화의집 내 위탁 사·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사·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포함하고, 운전면허증, 영양사, 조리사, 보일러기사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은 제외
- 국가, 민간자격구분 : <http://www.q-net.or.kr> 참조
- ※ 사람 기준이 아닌 자격증 기준으로 실적 적용. 단, 1인이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1건으로 인정함(같은 성격의 자격증을 급수별로 소지하였을 경우 1건으로 인정).

제출 증빙자료 4-5	1. 직원별 자격증 목록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직원별 자격증 사본 2. 근로계약서 3. 정규직 여부 확인(4대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 지표 4-2-4.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정규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정규직 직원들의 민간, 공공 연수 참여 경력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09년 0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 총[점]
[점수 산출기준 표]

내 용	예산지원여부	총참가자수	가중치	점수
자체연수	예산지원 없음		0.5	
	예산지원 있음		1.0	
외부연수	예산지원 없음		1.5	
	예산지원 있음		2.0	
총 점				

– 정규직원 1인당 전문자격증 참가율

$$\frac{\text{전문연수 참여 총점}}{\text{정규직원 수}} = [\quad] \text{점}$$

- ※ 각종 전문연수 참여 실적이 없는 시설 0점 처리
- ※ 배점 기준(상대 값, 절대 값 비교 검토 후 5등급 구간 적용)
- ※ 2010년 배점기준 (총점 기준이었음)

1점	2점	3점	4점	5점
1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 이상

⑤ 평가요소 :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배치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인력의 경우 모두 제외(정규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모두 제외)
- 청소년문화의집 내 위탁 사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사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 교육연수내용 필히 확인
-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연수는 제외

제출 증빙자료 18	1. 참여 연수 결과 현황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자체교육 추진 실적(예산내역이 포함되어 제시) 2. 외부교육 참여 실적 증빙자료 3.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직원 확인

■ 4-3. 근무 안정성

▶ 지표 4-3-1. 직원의 근속일수 (계산식 점점 필요 : 오래된 곳 무조건 유리)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정규직 직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관리 자료(퇴직자 현황 중심)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09년 01월 ~ 2011년 12월 기준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정규직 직원 1인당 근무일수 :

$$\frac{\text{정규직 직원 근무 기간(재직자+퇴직자)}[\text{일}]}{\text{정규직 직원 수(재직자+퇴직자)}[\text{명}]} = (\text{A 일})$$

－ 정규직 직원 1인당 근무일수 지수화 계산법 :

$$\frac{(A) \text{ 일}}{(B) \text{ 실제 일수 기준 (365일 X 3년 기준)}} \times 100 = (C) \%$$

※ 정규직 종사자 근속연수 실적 없는 시설은 0점 처리

※ 배점 기준 : 상대 값, 절대 값 비교 검토 후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182일 미만	182일 이상	365일 이상	724일 이상	1,089일 이상

⑤ 평가요소 :

－ 직원들의 근무 지속성의 수준

－ 재직자 : 201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

－ 퇴직자 :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정규직 직원

－ 근무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준(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정규직원은 제외)으로 근무한 일수

－ (B)실제 운영 일수 : 3년간 운영 가능 일수를 의미.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원 시설의 경우 개원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배치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인력의 경우 모두 제외(정규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모두 제외)

－ 청소년문화의집 내 위탁 사도(사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사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 위탁기관 변경 시, 변경 시부터 적용 후 운영기간 3년 환산 적용

－ 근무일수는 일수로 계산, 휴직자는 3개월 이하만 인정함.

※ 운영법인(재단법인 및 시설관리공단 등) 채용 기준이 아닌 청소년문화의집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적용(인사발령 등 확인)

※ 퇴직자 근무기간 확인 필요 : 입사일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2009년 01월01일부터 적용한 시설 있음.

제출 증빙자료 19	1. 직원명부(퇴직자포함)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유무 및 내용 확인 2. 인사기록카드 3. 기타 증빙자료

▶ 지표 4-3-2. 직원의 복지수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원들의 능률향상 및 사기진작, 동기부여를 위한 복지 및 후생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직원의 근로환경,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 관련규정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직원면담, 현장평가(자료내용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척도
 - 매우 미흡(1) : 전체 직원 대상 복리후생 4가지 이하 실시
 - 미흡(2) : 전체 직원 대상 복리후생 5가지 이상 실시
 - 보통(3) : 전체 직원 대상 복리후생 6가지 이상 실시
 - 우수(4) : 전체 직원 대상 복리후생 7가지 이상 실시
 - 매우 우수(5) : 전체 직원 대상 복리후생 8가지 이상 실시
- ⑤ 평가요소
 - 복리후생의 종류

①명절선물 또는 격려금, ②건강관리지원, ③근무복 지급, ④학자금지원, ⑤차량유지비 지원, ⑥성과급, ⑦숙소제공, ⑧우수사원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 ⑨장기근속자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 ⑩기타

- 기타에는 직원경조사비 지급, 안식년(월), 해외연수, 성과급 등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

※ 단, 직원 2~3명과 면담을 통해 아래의 취업규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복리후생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흡’ 등급으로 처리함.

※ 취업규칙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출 증빙자료 19	1. 관련규정 및 증빙서류
현장평가 확인자료	1. 복리후생규정, 복무규정, 인사관리규정 2. 복리후생 증빙서류 3. 급여대장 또는 결산서 4. 직원 면담

■ 4-4. 시설 활용

▶ 지표 4-4-1. 연간 시설 운영률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연간 운영 가능한 일수에 대비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일수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시·군·구 조례, 위탁기관(법인, 재단)의 운영규정, 청소년문화의집 내규, 운영계획서,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연 290일 미만
 - 미 흡(2) : 연 290일 이상 300일 미만 운영
 - 보 통(3) : 연 300일 운영
 - 우 수(4) : 연 300일 초과 운영
 - 매우 우수(5) : 연 300일 이상 운영과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
 - ⑤ 평가요소 :
 - 연간실제운영일수는 실제 개관하여 운영한 일자를 의미함.
 - 2011년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공휴일 운영 및 평일 22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시설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일수는 제외(근거자료 확인)
-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에 의거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인해 개관하였을 경우 현장평가 시 각종 자료를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순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을 위해 개관했을 경우는 제외)

제출 증빙자료 21	해당 없음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운영규정 및 운영일지 등 근거자료

▶ 지표 4-4-2. 법적 시설기준 준수 (향후 재검토 필요: 분리, 내용확정)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수련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 및 동선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여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현황, 개·보수 현황 자료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09년 0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법적 시설기준 미 준수
 - 미 흡(2) : 법적 시설기준 준수 · 활동환경 열악
 - 보 통(3) : 법적 시설기준 준수 · 활동환경 보통
 - 우 수(4) : 법적 시설기준 준수 · 활동환경 우수
 - 매우 우수(5) : 법적 시설기준 준수 · 활동환경 매우우수
- ⑤ 평가요소 :
 - 시설 내 장비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후 등의 원인으로 인한 미운영장비가 다수인 경우는 1등급 감점 처리
 - 관련법 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문화의집 법적 시설 기준
 - ※ 평점기준 : 시설 내 활동환경을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 법적 시설기준 준수 및 활동환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 활동환경이 매우우수 하더라도 법적 시설기준 미 준수 일 경우 매우미흡 처리

제출 증빙자료 22	1. 시설 총별 평면도 2. 개·보수 실적 현황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5) 대외협력

■ 5-1. 대외협력

▶ 지표 5-3-1.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운영, 활동 프로그램(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타 기관과 업무협력 계획 및 업무제휴 자료, 협력 사업실적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정규분포 기준 5점 척도

－ 학교 및 지역 시설과의 협력 점수 = 총 [점]

[타 기관과의 협력 정도의 점수표]

구 분	실적건수	가중치	점수
MOU 체결한 지역연계		× 1.5점	점
MOU 체결 없이 진행된 지역연계		× 1.0점	점
소 계①			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여부②		× 1점	점
총 점(①+②)			점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상대 값과 절대 값과 비교 검토 후 유사 값 기준으로 5등급 구간 적용

※ 2010년 배점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이상	15점 이상	20점 이상

⑤ 평가요소 :

- 주요협력 내용은 공동사업(CA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적성지원, 방과후학교 연계, 전문인력지원 등)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대관은 제외함.
- 청소년문화의집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관련 연계 실적 제외
 - ※ MOU 체결기준은 기관과의 체결한 것을 말하며 개인과의 체결은 인정하지 않음.
 - ※ MOU 체결 시 동일프로그램 및 내용을 여러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을 경우 1건으로 인정함.

제출 증빙자료 14	1. 학교 및 관련단체 연계협력 증빙자료(공문서, 협약서) 등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증
현장평가확인자료	1. 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2. 협력제휴 증명 자료 3. 협력사업 추진실적 자료 4. 기타 대외협력을 위한 실적 자료

▶ 지표 5-1-2. 대외홍보 노력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외홍보를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인터넷홈페이지 운용실적, 홍보자료, 홍보실적 및 결과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홍보방법 1가지 이하 운영
 - 미흡(2) : 홍보방법 2-3가지 운영
 - 보통(3) : 홍보방법 4-5가지 운영
 - 우수(4) : 홍보방법 6가지 이상 운영
 - 매우 우수(5) : 홍보방법 6가지 이상 운영하고 연간 홍보계획서를 갖추

⑤ 평가요소 :

-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 여부
- 홍보방법의 유형은 인터넷홈페이지(포털사이트 카페 포함), 방송(중앙, 지방), 신문(중앙지, 지방지 포함), 소식지(부정기, 정기), 지역정보지, 전단지, 기관 홍보물(팸플릿) 등으로 구분
- 보도 자료의 경우 결과물(관련 기사 수록 시)이 있을 경우만 인정
- 프로그램(사업) 참여 모집을 위한 홍보 인정

제출 증빙자료 15	해당 없음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연간홍보계획서 2. 홍보실적 자료 3. 기타 홍보 실적

6) 안전 및 발전노력

■ 6-1. 안전 및 위생

▶ 지표 6-1-1. 안전 관리 수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의 안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한 수준의 시설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각종 안전점검표 대장 확인(실시 여부, 결과 파악), 안전교육일지 확인, 안전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 보 통(3) : 자체 안전점검 실시
 - 매우 우수(5) :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 지자체 보고
- ⑤ 평가요소 :
 - 관련법 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및 자체 안전교육 실시는 법적 의무사항임.

제출 증빙자료 23	1. 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관련 자료 2. 안전교육 관리대장 3. 안전교육 참여 실적 증빙자료 4. 자체안전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공문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종사자 안전교육일지 3. 매월 자체 안전점검일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 지표 6-1-2. 안전관리보험 가입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보험증권 및 보험보상액 증빙자료, 보험금 예산 지출 내역 등 증빙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안전관리보험(시설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 보통(3) : 안전관리보험(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 매우 우수(5) : 안전관리보험(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기타 다른 보험 가입
- ⑤ 평가요소 :
 - 시설안전관리보험 :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시설연면적 1,000㎡ 이상 의무가입), 화재보험, 가스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 : 실외 또는 타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시설 종사자 대상 가입한 상해보험
 - ※ 평점기준 : 안전관리보험 및 다른 보험가입 내용을 같이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 다른 보험을 가입 하였더라도 안전관리보험을 미 가입 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처리
 - ※ 시설안전관리보험 중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청소년문화의집은 가입으로 인정

제출 증빙자료 24	1. 보험가입증명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 지표 6-1-3. 위생설비 관리수준 (위생·환경)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생 및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위생설비 관리대장 유무 및 관리주기(화장실 등)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위생설비 관리 · 청결상태 매우미흡
 - 미 흡(2) : 위생설비 관리 · 청결상태 미흡
 - 보 통(3) : 위생설비 관리 · 청결상태 보통
 - 우 수(4) : 위생설비 관리 · 청결상태 우수
 - 매우 우수(5) : 위생설비 관리 · 청결상태 매우우수
- ⑤ 평가요소 :
 - 입구에 손소독기(소독세정액) 등 안전과 위생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1점 가점 부여
 - 위생설비 관리대장 보유여부 및 청결상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제출 증빙자료 25	1. 위생설비관리 대장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시설 환경 청결상태 육안 점검

■ 6-2. 종합평가

▶ 지표 6-2-1. 운영발전 노력정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운영발전을 위해 노력한 각종 증빙서류
- ② 평가방법 : 현장방문 평가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 간 상호 합의하여 평점 부여(최대 5점, 최하 1점)
- ⑤ 평가요소 :
 - ※ 3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을 +로 적용
 - 최근 3년간 운영개선이 높게 평가된 사항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실적 자료 등)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운영 정도(2011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인증 프로그램).
 - 지역여건, 운영유형(위탁 또는 직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운영발전 노력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밀착 수준이 높은 경우
 - 2011년 각종 포상·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 ※ 3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을 -로 적용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미 보유 2점 감점 부여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시 1점 감점 부여
 - 직원 채용 시 성범죄의 경력 미조회시 2점 감점
 - 현장방문 평가 시 평가대상 기관에서 평가위원에게 금전, 향응(식사대접, 지역특산물 제공 등) 등 접대행위를 시도하거나 시행할 경우 2점 감점 처리

▶ 지표 6-2-2. 종합평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개별 시설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평가과정 전반의 자료
- ② 평가방법 : 현장방문 평가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11년 0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 간 상호 합의하여 평점 부여(최대 5점, 최하 1점)
- ⑤ 평가요소 :
 - ※ 3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적용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세미나자료집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Ⅲ 워크숍 자료집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안) 시범적용

인 쇄 2012년 9월 19일

발 행 2012년 9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